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2125

발의연월일: 2021. 8. 19.

발 의 자:최혜영·강선우·김승원

유정주 • 박성준 • 임호선

서동용・정춘숙・박홍근

고영인 • 박주민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을 경우 제조업·수입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가령, 시설의 일부만이 훼손된 경우에는 허가취소나 업무정지보다 해당 시설을 개수하도록 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감독수단일 것임.

한편,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·수입업자 등에게 기준에 맞는 시설 구비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·유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임.

이에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, 수입업자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기 관이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개수명 령 및 시설사용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,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·수입·성능시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·제18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및 제22조·제31조제3호).

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개수명령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, 수입업자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하여야 한다.

- 1. 제조업자의 시설이 제5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
- 2. 수입업자의 시설이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
- 3.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시설이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
- 4.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·보관하면 「의료기기법」 제26 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제17조의2에 따른 개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의 제목 "(기술지원)"을 "(지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"품질관리체계"를 "품질관리체계에 대한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" 으로 한다.

제31조제3호 중 "제17조"를 "제17조에 따른 검사명령, 제17조의2에 따른 개수명령"으로, "검사명령이나 업무정지명령을"을 "업무정지명령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설></u>	제17조의2(개수명령)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조업자, 수입업자 또는 제8조제 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상 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수하도록 명할 수 있 다. 이 경우 개수가 끝날 때까 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하여야 한다. 1. 제조업자의 시설이 제5조제5 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 한 경우 2. 수입업자의 시설이 제11조제 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 나한 경우 3.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시설이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에 맞지 아니한 경우 4.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

제18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 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,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·수 입·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10호 또는 제11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8. (생 략) <신 설>

9. ~ 11. (생 략) ② (생 략)

제22조<u>(기술지원)</u>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의 안전성·유효성을 확보하기

<u>상되어 그 시설로 체외진단</u>
의료기기를 제조 · 보관하면
「의료기기법」 제26조제2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
제18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
정지 등) ①
1. ~ 8. (현행과 같음)
8의2. 제17조의2에 따른 개수명
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9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지원) ①

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3.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설과 제 조 및 품질관리체계 지원
- 4. 5. (생략)
- ② ③ (생 략)
- 제3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2. (생략)
 - 3. <u>제17조</u> 또는 제18조에 따른 <u>검사명령이나 업무정지명령</u>을 따르지 아니한 자

4. (생략)

1.•2. (현행과 같음)
3
품질관리체계에 대한
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
4. • 5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31조(벌칙)
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제17조에 따른 검사명령, 제
17조의2에 따른 개수명령
업무정지
 명령을
 4. (현행과 같음)